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
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462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3. 10. 16.

4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Ⅱ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○ 2023년 하반기 세입결손에 따라 교특회계전입금 1조 1,200억원 중 9,200억원이 미전입되어, 미전입액 9,200억원 및 이자수입을 감조정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감소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○ 운용규모 : 665,653,163천원 (기정 대비 △945,170,720천원 감소)

○ **수입계획: △945,170,720천원 감소**

☞ **(기정)** 1,610,823,883천원 → **(변경)** 665,653,163천원

- **교특회계전입금 : △920,000,000천원 감소**

(1,120,000,000천원 → 200,000,000천원)

► 2023. 하반기 세입결손에 따라 교특회계전입금 미전입액 감조정

- **이자수입 : △25,170,720천원 감소** (25,724,036천원 → 553,316천원)

► 교특회계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

❍ **지출계획: △945,170,720천원 감소**

☞ **(기정)** 1,610,823,883천원 → **(변경)** 665,653,163천원

- **예치금 : △945,170,720천원 감소**

(1,610,823,883천원 → 665,653,163천원)

► 수입계획(교특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)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

Ⅳ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: 해당사항 없음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62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‘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’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, 동 기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이와 같은 기금은 일반 예산과는 다르게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정책사업 지출액이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‘지방기금법’ 제11조제2항단서[1]).

○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당초 전입이 예상되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

---

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 략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「재해구호법」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금 9,200억원이 미전입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인 ‘예비비 및 기타’가 당초 지출계획(1조 6,108억 2천 4백만원)보다 △58.7%(9,451억 7천만원)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.

○ 따라서 동 변경안은 ‘지방기금법’ 제11조에 따른 시의회 의결 사안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 동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(의안번호 925, 2023.5.30.)하였으나, 지방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안 제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운용계획 변경안을 철회(대외협력관-4286.2023.6.8.)하였습니다.

따라서 금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차 변경안이 아닌 제1차 변경안에 해당할 것인바, 서울시교육청의 안건 제출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.

[표-1] 기금 지출계획 변경 내역

(단위: 천원, %)

지 출 계 획				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감 (B-A)	증감비율
계	1,610,823,883	**665,653,163**	△945,170,720	△58.7
예치금	1,610,823,883	**665,653,163**	△945,170,720	△58.7

□ **이상으로「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「재해구호법」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